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2025년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25년도 논공효천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이사장



- 1. 장학생 신청 및 접수기간 : 2025. 2. 3(월) ~ 2. 28(금)
- 2. 접수처 :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팀(☎053-668-5473)
- 3. 장학금 지급 계획 : 15명, 4,200만원

(단위 : 명,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선발인원	지급금액	비 고
합 계			15	4,200	
일반장학금	소 계		8	2,300	
	대학생(4년제)	400한도	4	1,600	
	대학생(2·3년제)	300한도	2	600	
	초·중·고 특기생	50	2	100	
특별장학금	소 계		7	1,900	
	대학교 입학생	수능우수	400	2	800
		다자녀	400	2	800
	고등학생		100	3	300

※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사유 : 타 장학금 수혜자는 타 장학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

4. 신청자격

● 일반장학생

- 선발공고일 현재 논공읍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읍민과 그의 자녀로서,
- 초·중·고등학생 중 예·체·기능의 특기가 있거나,
-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중에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자
- 대학생 학업성적 조건
 -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4.5 만점 기준 3.0 이상, 4.3 만점 기준 2.8 이상, 4.0 만점 기준 2.5 이상인 자
 - 입학생 : 수학능력평가 점수 평균 5등급 이상(수능 미응시자는 6월 평가모의 고사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자)
-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은 지원 불가
- 예·체·기능 특기자 조건
 -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시·도 단위대회 우승자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실적이 있는 자
- ※ 수상 및 선발 시기는 2024. 1. 1. ~ 2024. 12. 31. 내로 한함.
- ※ 대회요강 : 대회성격 및 등위순위, 주최측 연락처 등이 기재
- 대회요강자료가 없을 경우 순위를 파악할 수 없어 선발제외 함.
- ※ 단, 동일 수상실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 특별장학생

- 선발공고일 현재 논공읍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읍민과 그의 자녀로서,
 -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자(2명)
 - ※ 단, 선발자는 수능점수 평균 2등급 이내
 - 2)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2명)
 - 고등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 선발(3명)
- ※ 단, 특별장학생에게는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및 감면 금액과 상관없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 ※ 특별장학생 탈락자(대학생)는 자동으로 일반장학생 신청자로 전환됨.

5. 장학생 신청(선발) 제외자

- 일반장학생 중 타 장학금 400만원 이상 또는 등록금 전액 수혜자
 - ※ 장학금 지급 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 조치
 - ※ 타 장학금을 일부 지급받을 경우, 타 장학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
- 직전년도 효천장학금 수혜자
 - ※ 단, 수혜대상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9조의 5)

6. 구비서류

● 공 통(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 작성서류(첨부서식)
 - : 장학생 선발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논공읍장 및 이장 추천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년 전체, 부·모 모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 전체, 부·모 모두),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모 중 한 명이 피부양자일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 예 · 체 · 기 능 특 기 생

- 대회성적 증빙자료(상장, 경기실적증명서, 대회요강, 안내문, 팸플릿 등)

● 대학교 신입생

- 수능성적표(수능 미응시의 경우 6월 모의고사 성적표)
- ※ 특별장학생의 경우, 모의고사 성적표로 대체 불가

● 대학교 재학생(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

- 성적증명서(2024년 2학기)
- ※ 복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7. 장학생 선정 : 2025년 3월 중 이사회 개최 후 선정

※ 선정 결정 후 본인에게 개별 통보

8. 장학금 지급시기 : 2025년 3월 말 지급 예정(변경될 수 있음)

[별지 1]

장학생 선발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	자택	
	한자					휴대전화	
주소							
등록기준지							
학교명				학과		학년	
보호자	성명			연락처			
	직업			학생과의 관계			

상기본인은 재단법인논공효천장학회운영세칙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
으로 선정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학교장추천서 1부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재단이사장 귀하

학 교 장 추 천 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학교명 : 학교 학과 학년
- ◎ 학교전화번호 :
- ◎ 확인사항

전 학기 성적		장학금수혜여부			종합의견
평 균	당해학년 석 차	장학금명	지급기관 (단체명)	연간장학금액	
/100	/			천원	

위의 학생은 20 년 월 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상기
내용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며 재단법인논공효천장학회의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 1.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등록금고지서 사본(또는 영수증)1부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고교생에 한함)
3.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20 년 월 일

학교장

인

재단
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재단이사장 귀하

학 교 장 추 천 서

- ◎ 성 명 :
- ◎ 주 소 :
- ◎ 생년월일 :
- ◎ 학 교 명 :
- ◎ 학교전화번호 :
- ◎ 확인사항

분야	대회명	대회성적	수상일자	종합의견

위의 학생은 상기의 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의 장학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추천합니다.

- 첨부 1. 재학증명서 1부.
2. 증빙서류(상장, 경기실적증명서, 대회요강 안내문 등).

20 년 월 일

학교장

인

재단
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재단이사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등록 기준지			
현주소			
보호자명		관계	직업

1. 본인이 받은 특혜를 명심하고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충실하겠으며
귀 재단의 숭고한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2. 수혜기간 중 본인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3. 학업도중 이사회의 심사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 할지라도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재단이사장 귀하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이하 '효천장학회')의 학자금지원(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신청인으로서 효천장학회로부터 학자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학 자 금 종 류	대출	(예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예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스쿨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학회이사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할지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 ㉠

보호자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재단법인 농공효천장학회는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이	호	지
---	---	---

학생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